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04
----------	------

제출년월일 : 2026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사랑상품권 소멸시효 도래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효 완성 상품권 환불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선불충전금 계좌 이자 세입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사랑상품권 소멸시효 명시 및 환불 절차 명시(안 제4조의3, 부칙 제1조)
- 나. 선불충전금 계좌 발생 이자 세입 근거 명시(안 제4조의2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창의를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6. 4. 9. ~ 4. 29.)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김아영(☎ 2133-5139)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할인보전금”이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비율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①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은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해지 또는 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품권의 본인부담금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할인보전금은 당초 재원 부담비율에 따라 국가 및 시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제8조제5항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9조 제3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품권 업무 소관 담당관”을 “소상공인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업무 소관 담당관”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관련 조례”를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인액”을 “할인보전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환급되지 아니한 본인부담금과 할인보전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u>할인보전금</u> ”이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비율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② (생략)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u>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생략)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시</u> ----- ----- ----- -----.
제4조의2(서울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② (생략) <u><신설></u> <u><신설></u>	제4조의2(서울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상품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u>시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u> 제4조의3(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① <u>상품권의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u>

제8조(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 사항 등) ① ~ ④ (생략)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

②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잔액 중 사용자가 구매 시 부담한 금액(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은 소멸시효 완성 후 사용자의 계좌로 환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계좌의 미등록·해지 또는 정지 등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 동안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품권의 본인 부담금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의 할인보전금은 당초 재원 부담비율에 따라 국가 및 시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한다.

제8조(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 사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지역
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의 조건)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자치구를 지원을
할 때에 제9조 제3항에 따른 조
치 및 제8조에 따른 판매대행점
이용 등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상품권 업무 소관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업무
소관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이 위촉한다.

1. ~ 4. (생 략)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
는 상품권 업무 소관 담당관이

----- 「개인정보 보호법」 -----

-----.

제11조(재정지원의 조건) -----

----- 제9조제3항-----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
과 같음)

② -----

위원 중-----.

③ ----- 소상공인정책
과장-----

-----.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

된다.	<u>관</u> ----- ---.
제1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 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u>관련 조례</u>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수당) ----- ----- <u>예산</u> 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 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제20조(환수 조치) 시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상품권 <u>할인액</u> 등 부 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 수할 수 있다.	제20조(환수 조치) ----- ----- ----- <u>할인보전금</u>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제4조의3 신설) 서울사랑상품권 소멸 시효 완성 후 낙전 자동환불로 세외수입 미귀속
- 관련 조문 :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소멸시효 및 잔액의 처리) 신설
- 비용 발생 원인 : 현행 조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서울사랑상품권 잔액(낙전)을 시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멸시효 완성 즉시 사용자 계좌로 자동환불하고 계좌 미등록 등으로 자동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1년간의 환불 신청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에 세외수입으로 귀속되던 낙전 금액만큼 시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비용 종류 : 재정수입의 순감소 (소멸시효 완성 상품권 낙전의 세외수입 미귀속)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 기준일 : 2026. 3. 19. (조례 개정 추진 기준)
- 추계 기간 : 조례 시행일(2026. 7. 예정)로부터 5년 (2026년 ~ 2030년)
- 가격 기준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 적용
- 추계 전제 및 방법 :
 - 1차년도(2026) 수입 감소액은 현재('26.3.19. 기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불되지 아니한 본인부담금 약 33,000천원(33백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 비용추계일(26.3.19.) 기준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낙전 예정액은 사용자 사용 및 환불 여부 등의 변수가 있으므로 비용추계에 포함하지 않음

- 2차년도(2027) 이후 수입 감소액은 향후 발생할 소멸시효 완성 상품권의 낙전 규모에 따라 결정되나, 이는 이용자의 상품권 잔액 보유 및 사용 추이 등에 따라 매년 달라지므로 현 시점에서 계량적 추산이 곤란함
- 또한 서울사랑상품권 시효 완성 후 낙전 규모를 감소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지속적인 사용 독려 예정으로 예상 재정수입 감소액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이용자의 계좌정보 미등록 등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낙전(본인부담금)의 경우, 서울시 세입으로 귀속될 수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단위:천원)

연도		1차년도 (2026)	2차년도 (2027)	3차년도 (2028)	4차년도 (2029)	5차년도 (2030)	합계
구분	지출						
	◦ 해당없음						
수입	소계(a)						
	◦ 낙전 세외수입 미귀속	△33,000	추산곤란*(사용자 상품권 사용 추이에 따라 변동)				
	소계(b)	△33,000					
	□총 비용(a-b)	△33,000					

※ 기준일 이후 1차~5차연도의 예상 수입은 이용자의 상품권 사용 추이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환불예정액 중 계좌정보 미등록으로 환불이 불가한 본인부담금의 경우 서울시 세입으로 귀속될 예정임

4.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비						
	지방세수입						
시비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 본 개정안은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며, 기존에 세외수입으로 귀속되던 소멸시효 완성 상품권 낙전을 이용자에게 환불함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만을 수반함
- 재정수입 감소분에 대한 별도의 보전 재원 조달 계획은 없으며, 해당 금액은 본래 이용자가 상품권 구매 시 부담한 금액으로서 시민에게 반환하는 성격임

5. 덧붙이는 의견

○ 낙전 수입의 가변성 및 계량적 추계의 한계

- 서울사랑상품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낙전 규모는 매년 발행액, 이용자별 잔액 현황, 사용 추이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5년간의 총 수입 감소액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시효 만료 전 알림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사용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의 자발적 잔액 소진이 확대될 경우 실제 낙전 발생 규모는 현재의 예상치보다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세입 처리의 한계

- 소멸시효 제도는 본래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시효이익의 포기를 강요하는 상황 등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장치임.
- 그러나 본 사안은 민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채권자인 상품권 이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시효이익 포기를 강요하는 상황이 아니며, 상품권 자금을 운용하는 채무자인 서울시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주도적으로 환급을 시행하려는 것임
- 따라서 단순히 법률상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는 형식적인 사유만으로, 시민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미사용 잔액(낙전)을 당연히 시(市)의 세입으로 확정하는 것은 제도 본연의 취지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무리가 있음.

6. 작성자

-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김아영 주무관(☎2133-5139)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재정수입 감소 - 소멸시효 완성 상품권 낙전 세외수입 미귀속

가. 비용추계 방법

- 본 개정안에 따른 재정 영향은 기존에 시 세외수입으로 귀속예정 소멸시효 완성 상품권 낙전이 이용자에게 환불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감소임

○ 1차년도(2026) 수입 감소 추계 산식 :

- 2026. 3. 19. 기준 소멸시효 완성 후 미환불 본인부담금 잔액 = 약 33,000천원

- 동 금액은 조례 시행 후 이용자에게 환불 처리되므로 시 세외수입 미귀속 = △33,000천원

나. 2차년도 이후 추산 곤란 사유

○ 시효도래 이후의 수입 감소액은 아래 요인에 따라 매년 달라지므로 현 시점에서 계량적으로 추산하기 곤란함

① 상품권 발행 규모 및 연도별 변동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액은 예산 편성 및 국·시·구 정책에 따라 매년 달라지므로, 향후 발행분에서 발생할 낙전 규모를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

② 이용자 사용 추이 : 소멸시효 만료 전 이용자가 잔액을 얼마나 소진하는지는 개인별 이용 성향에 따라 상이하며, 만료 전 사용 독려 알림 등 정책 효과에 따라 낙전 발생률이 변동함. 또한 판매대행점 변경으로 앱이 변경될 때 신규앱 미가입으로 잔액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으나, 기존 앱의 소유권을 서울시로 하여 낙전 발생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③ 상품권 사용 독려 효과 : 현재 서울페이앱에서 알림톡, 앱푸쉬, 메시지 등을 통하여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품권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상품권의 규모가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이상의 사유로 2차년도 이후 비용은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계량적 추계를 갈음하고 그 사유를 기술함

다. 연도별 낙전 예상 규모 참고 현황

○ 아래는 기 발행된 서울사랑상품권의 낙전 예상액으로, 향후 계좌정보 미등록 등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예상금액 중 일부는 서울시 세입으로 귀속될 수 있음.

구 분	'20년 발행 ('25 소멸)	'21년 발행 ('26 소멸)	비 고
서울사랑상품권 낙전	19백만원	14백만원	'22년 이후는 추산 불가
합 계	19백만원	14백만원	